

○ 직무상 상해로 인한 보상금 수혜자가 장애 또는 사망했을시는 장애 및 사망보상금 지급 금액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감하고 지급(안 제4조 제3항)

3. 검토보고요지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(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)의 개정에 합리되는 개정(안)으로서 문제점이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해	당	없	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만장일치

나. 반대 : 해당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의견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
의 건	95. 8. 12
년 월 일	(제40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8. 3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(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)으로 관련조례를 개정

□ 주요골자

-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(안제2조)
- 직무상 사망 및 상해시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개정(안제4조 제1항)
- 직무상 상해로 인한 보상금 수혜자가 장애 또는 사망했을시는 장애 및 사망보상금 지급금액에서 기 지급한 금액을 감한후 지급(안제4조 제3항)

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의 [“일비”라]를 [“회의수당”이라]하고, “일비”를 “회의수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“일비”를 각각 “회의수당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의 경우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감하고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 (정의) ① (생략)		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		
1. (생략)		1. (현행과 같음)		
2. “일비”라 함은 영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.		2. “회의수당”이라		
		... 회의수당을		
3. (생략)		3. (현행과 같음)		
제4조 (보상금의 지급기준)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		제4조		
				

현행	개정안
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·도의원 당해년도 <u>일비의 2년분</u> 에 상당한 금액	1. <u>회의수당의</u>
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·도의원 당해년도 <u>일비의 1년분</u> 에 상당한 금액	2. <u>회의수당의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신설</u>	③ 제2항의 경우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감하고 지급한다.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종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8. 2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5. 8. 3
- 라. 상정일자 : 1995. 8. 12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부칙 제3항(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, 부군수, 부구청장 직급에 관한 규정)에 의거 민선시장 이전의 부시장 직급이 3급(지방부이사관)에서 민선시장 선거이후 2급(이사관)으로 상향 조정되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례개정